

8.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2,996号 1990. 5. 1. 公布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체육복표”를 “체육복표당첨소득”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당첨소득

제55조의제11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67조의 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주차장용 토지. 다만, 법인세법시행령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6. 골프장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7.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

8. 임야·농경지·모포장용 토지등

9.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등

10. 블록·토관·기타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11. 염전·광천지·지소용 토지

12. 음식업에 사용되는 토지등, 이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3. 광업권 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제55조의11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

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이 재
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재
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생산성향상시설을 제외한다.

제57조의2제1항중 “1990년6월30일”을 “1990년12월31일”로 한다.

[별표6]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별표6]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용
대통령령 제12750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증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1990년6월30일”을 각각 “1990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부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11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6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改正理由

經濟活性化 綜合對策을 稅制面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設備投資 및 技術開發의 生략 ~促進과 企業의 勤勞者用 住宅建設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法人이 社員用으로 賃貸住宅 또는 小規模分讓住宅의 취득을 위한 資金調達을 위하여 業務用으로 사용하던 不動產을 讓渡하는 경우 그 不動產의 讓渡하는 경우 그 不動產의 讓渡所得에 대한 特別附加稅를 免除함으로써 勤勞者의 住居生活安定을 지원함(令 第55條의11第8項).

나. 企業이 尖端技術設備에 投資하는 경우에는 投資金額의 100分の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製1項第6號의2).

다. 製造業 및 鑛業을 영위하는 事業者가 1990年6月30日까지 事業用 機械裝置에 投資하는 경우 그 投資金額의 100分の 10(外國產 事業用 機械裝置의 경우 100分の 3)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는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를 限時的으로 施行하고 있는바, 景氣浮揚 및 投資促進을 위하여 그 施行 期限을 1990年6月30日에서 1990年12月

31日로 6個月 연장함(令 第57條의2第1項).

라. 企業이 生産性向上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과 中小企業이 技術指導를 받기 위하여 支出한 費用을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對象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支出額의 100分の 10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도록 함(令 別表6第1號바目 및 第2號바目).